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 참여기준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재생에너지 연계,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대폭 확대 예정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소요,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근거 마련
(현행 제18조제3항 개정)

- 1)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읍·면·동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고시 예정)의 설비의 경우 시·군·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로 기준을 완화

*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대상 설비 규모,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근거 관련 고시
동시 개정 예정 (해당 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 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송전
및 변전 설비의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1명 이상을 주민대표인 입
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6(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읍·면·동별로 1명 이상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u>단서 신설</u> >	제18조의6(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송전 및 변전 설비의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1명 이상을 주민대표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연 락 처	(044) 203 - 3931